

○성수대교 붕괴시 타 방송사보다 가장 빨리 보도하여 전문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좋은 여론을 얻고있는바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관계자에 대한 사기양양책을 수립시행 할것.

6. 기타 특기사항

○없음.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準向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委員會의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を 專門委員이 지금 報告한 대로 採擇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2. 서울特別市駐車違反車輛牽引等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3.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38分)

○委員長 柳準向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駐車違反車輛牽引等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交通局長 나오셔서 條例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黃哲民 說明에 앞서서 12月 13日자로 서울시 幹部職에 대한 人事異動이 있었습니다.

交通局에서는 그간 運輸1課長으로 勤務하던 林綵瑾 課長이 財務局 會計課長으로 가고, 運輸2課長으로 勤務하던 李點贊 課長이 道路局 建設行政課長으로 人事異動이 되었습니다.

새로 銅雀區 市民局長으로 있던 尹 泌 局長이 運輸1課長으로, 江南區 市民局長으로 勤

務하던 李正烈 局長이 運輸2課長으로 發令을 받아 勤務하게 되었습니다.

(幹部紹介: 運輸1課長 尹 泌, 運輸2課長 李正烈)

서울特別市駐車違反車輛牽引等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報告)

동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주차단속과 견인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25대를 '95년부터 각 구청에 이관토록 방침을 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토록 한 규정을, 구청장이 직접 이동하도록 개정하였고,

둘째, 이에 따라 시 세입조치되었던 견인료 수입을 '95년부터 구 세입조치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였던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용을 구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단속권자인 구청장에게 관할사무와 비용귀속을 일치시킴으로서,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報告)

동 조례는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한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 특별